



파이 슈크림 제조방법의 영업비밀 해당성 관련 제조 위탁계약해제로 발생한 판매대금 등 청구사건

17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4년(와) 제162호
판결 일자	2002. 7. 30.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마우치제분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무기노호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 민법 419조		
영업 비밀	파이·슈크림 제조 방법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경쟁, 신의칙, 손해배상청구권		

02 사건 개요

원고는 제분 및 식품가공판매를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파이·슈크림(이하 ‘파이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파이스를 제조·판매하게 되었다.

원고는 파이스 제조를 위해 소송 외 회사인 ‘레온사’의 기계를 도입하고 기술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일본제분’으로부터 ‘미스터도넛점용 파이스 생지’의 제조를 의뢰받고, 피고의 파이스를 제조하던 것과 동일한 제조라인을 도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기술비밀유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제조위탁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의 생지판매대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판매대금 지불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p>피고의 영업비밀은 해당 기계 제조사의 계간지에 기재된 배합비율과 동일하며 이를 비밀로 관리하지도 않은 바, 영업비밀이 아니다.</p>		<p>원고가 타 회사를 위해, 우리의 영업비밀을 가지는 제조라인을 설치한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p>
<p>피고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온도 등에 대하여, 우리의 제조공정은 상당한 폭이 있는 범위를 보이며 양자는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p>		<p>원고가 사용한 파이슈는 동일한 제조공정을 사용한 것이며, 만들 때 사용하는 온도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다.</p>
<p>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는 인정하나, 해당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정보로서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p>		<p>원고와의 제조위탁 계약에 있어, 원고는 제3자의 의뢰에 관해 파이슈를 제조해서는 안된다는 신의칙상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p>
<p>피고는 제조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고,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대금의 지불을 거부한 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원고의 주장을 다룬다.</p>

04 판결 요지

<p>피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검토하건대, 해당 배합비율은 '레온사'의 계간지에 해당 레시피가 게재되어 있었고, '레온사'가 해당 정보를 단골업체들에게 배포하였던 점이 밝혀진 바,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p>
<p>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경쟁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가 본인의 생지 제조 시, 피고 고유의 파이슈에 관한 비밀정보를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비밀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다.</p>

신의칙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사와의 합의에 따를 때, 비밀유지 의무는 피고 독자적인 파이슈 이외의 파이슈에 관하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피고 독자의 파이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원고의 지불거절에 따른 피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반하는 바가 없고, 해당 판매대금의 채무불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도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아닌 금 4191만 6376엔 및 이에 대해 2002년 1월 5일부터 지불완료까지 연 6분의 비율로 금 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05 Key Point

이미 공지되었던 정보는 영업비밀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는 부정경쟁이 불성립하는 근거가 된다.

신의칙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은 해당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약정에 따라 종국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